

분권화 시대의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김순은 | 동의대학교 행정학과

민선자치는 올해로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우여곡절을 거쳐 재개되었음을 감안할 때 민선자치 10년을 맞는 올해는 역사적인 시점이다. 지방의회만을 논의한다면 14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이다. 역사적인 시점을 맞이하여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던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채택되었다. 이 외에도 분권화 시대에 지방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조치가 사후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1)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헌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헌법 개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의 작업만이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20조의 개정이 요구된다.

2)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가 그동안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개선사항 중의 하나가 지방의회 사무처(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독립이었다. 지방의회 의회사무처(국)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귀속되는 까닭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다.

3) 전문위원제의 재검토

지방의회 사무처(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에 귀속되면 상당부분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체제와 개선되었을 경우를 대분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어떠한 체제이든 전문위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현재 일부 광역지방의회에서는 유급보좌관제도를 주장하고 있지만 유급보좌관제도보다는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되어있는 전문위원을 2-3명씩 증원하여 입법보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지방의회의 대집행부 견제기능 및 감사기능 강화

현재 단체장 우위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대집행부 권한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가 지역의 최고 정책결정기관으로서 위상을 분명히 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한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5) 상임위원회 설치의 자율화와 제척요건의 강화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이에 부응하는 지방의회의 논의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주로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에 기초하여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상임위원회가 조례안 발의권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임위원회의 설치를 조례로 자율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원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때 일정한 제척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의 유급제와 권한강화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의회내의 로비스트라는 비판을 감안할 때 지방의원들에게 일정한 제척요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6) 지방의회의 회기제 재검토

지방의회의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양질의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회의일수가 충분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회기 및 회의일수에 관계없이 월정수당으로 지방의원의 경제적 급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회기 및 회의일수는 지방의회의 조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7) 성과감사제도의 도입

지방행정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의 중요성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대집행부 견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의 서비스를 계량화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성과감사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성과감사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의회는 성과측정치와 성과목표에 따라 집행부를 평가하면 되기 때문에 제도의 운영도 용이할 것이다. 지방의회가 조례로 성과감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8) 지방의회의 책임성 확보방안

유급제의 도입으로 지방의회의 지위가 향상되고 지방의회의 정치·행정권한이 강화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지방의원 개인에 대한 방안과 지방의회에 대한 방안이 있다.

지방의원의 개인에 대한 책임성 확보방안은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일단

당선되더라도 자격미달의 지방의원은 항상 주민소환의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주민소환제의 도입에 대하여 80.9%가 찬성하였고 반대비율은 12.6%였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주민소환제의 도입에 대하여 77.7%가 찬성하였고 5.3%만이 반대하고 있음은 지방의원 개인에 대한 책임성 확보방안이 절실히 요구됨을 나타낸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도 성과감사제도와 같은 의정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9) 여성 비례대표제의 확대

지방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제의 확대실시로 여성의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성의원들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처리하는 많은 사무들 가운데 환경, 보건복지, 교육 등의 업무가 여성의 시각에서 파악할 때 보다 생산적임을 감안할 때 여성의원들의 비율이 더욱 제고되어야 한다. 향후 여성의원들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여성의원들의 비율이 지방의회 정원의 20-30%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